

한 준수규정(가이드라인)의 작성, 운영, 관리

4. 제3호의 준수규정(가이드라인) 관련부서에 대해 주지 및 지도
5. 준법교육 실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관련 홍보
6.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한 회사 임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7. 회사 내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법 준수 인식도 측정
8. 공정거래관련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관행에 대하여 사전 심사 및 위반 사항 확인
9. 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성 측정 및 평가 시행
10.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제반 문서 관리
11.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실무,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및 지시 사항 수행

②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의 직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관련법령 및 회사 내부규정 변경 시 각 부서의 제 업무규정 및 업무매뉴얼 등 자체 정비 및 그 이행여부 점검
2. 자율준수편람 또는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각 부서의 그 위반 여부 점검
3. 소속 부서 임직원들에 대한 자율준수 교육 및 상담
4. 공정거래관련법령 및 이 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

5.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담당자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 및 자문 요청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련 내용 기록 및 유지

제8조 (자율준수 전담부서의 지정 및 회사의 지원)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는 ()로 지정하며, ()은 자율준수담당자로서의 직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자율준수담당자의 자율준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한다.

제2절 자율준수위원회

제9조 (자율준수위원회 운영 및 구성)

- ①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임직원의 제재, 자율준수에 모범적인 임직원에 대한 포상 및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회부하는 사안 등을 심의한다.
- ② 자율준수위원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2. 위원 :
 3. 간사 :

제10조 (자율준수위원회 권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관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1. 회사 중요 사업의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2.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3. 자율준수프로그램 관련 규정, 지침의 제·개정시 협의
 4. 공정거래관련법령 위반 임직원 제재(인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심의·의결
 5. 자율준수에 모범적인 임직원 포상에 대한 심의·의결
 6.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회부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 협의를 위해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사안의 적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 ④ 해당 부서장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⑤ 자율준수담당자는 협의내용과 그 검토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⑥ 자율준수담당자는 해당부서가 통보내용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율준수위원회 소집 및 의결)

- ① 자율준수위원회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소집하되, 소집일시, 장소, 의안 등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간사 또는 위원은 자율준수위원회의 소집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자율준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자율준수담당자는 의사록을 작성하되, 작성 후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재를 득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척)

제재조치의 사안에 대하여 위반행위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절 임직원

제13조(임직원의 의무)

-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공정거래관련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이 규정 등 회사의 자율준수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사 임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관련법령 위